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38호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5일

대전광역시의회의장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대전광역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제휴나 협약이 신중하게 체결되어 효율적으로 추진·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3조).
- 나.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 업무 처리 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는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협약이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업무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대전광역시장은 그 주요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정함(안 제 6조).
- 라. 대전광역시장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참조 : 행정 자치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24, FAX 042-270-5029, E-mail : pil6969@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협약”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제휴기관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
2. “업무제휴기관”이란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 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체결하는 모든 업무협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협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 업무 처리 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업무제휴기관과 업무협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협약의 관리) 시장은 업무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업무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
2. 제7조에 따른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 결과

제6조(시의회 보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다만,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회 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업무협약이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업무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제7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